

#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·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0000 호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 2025. 1. .  
제 출 자 오강현 의원

## 1. 제안이유

-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2.5%를 반영하여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금액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·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」 별표1의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금액 수정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: 붙임 참고
- 나. 조례안 예고기간 : 2025. 2. . ~ 2025. 2. .
- 다. 예산조치 : 본예산 반영 완료
- 라. 그 밖의 사항
  - 1) 부서협의 : 해당없음
  - 2) 관련부서 : 해당없음

##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·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·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 중 2025년 지급액 “24년 월정수당에 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”을 “월 2,890,610원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1]                     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                     (제2조제3항 관련)</p> <p>1. 연도별 월정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 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 급 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3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월 2,772,970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4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월 2,820,110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5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‘24년 월정수당에 ’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6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‘25년 월정수당에 ’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연 도	지 급 액	2023년	월 2,772,970원	2024년	월 2,820,110원	2025년	‘24년 월정수당에 ’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	2026년	‘25년 월정수당에 ’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	<p>[별표 1]                     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                     (제2조제3항 관련)</p> <p>1. 연도별 월정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 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 급 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3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월 2,772,970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4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월 2,820,110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5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월 2,890,610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6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‘25년 월정수당에 ’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연 도	지 급 액	2023년	월 2,772,970원	2024년	월 2,820,110원	2025년	월 2,890,610원	2026년	‘25년 월정수당에 ’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
연 도	지 급 액																				
2023년	월 2,772,970원																				
2024년	월 2,820,110원																				
2025년	‘24년 월정수당에 ’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																				
2026년	‘25년 월정수당에 ’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																				
연 도	지 급 액																				
2023년	월 2,772,970원																				
2024년	월 2,820,110원																				
2025년	월 2,890,610원																				
2026년	‘25년 월정수당에 ’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																				

**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·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**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·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08.1.4) <개정 2021.12.31., 2022.11.16., 2023.9.27.>

**제2조(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)** ①김포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에게는 일상적인 직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. <개정 2023.9.27.>

②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.

③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[별표1], [별표2]와 같으며, 각각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, 최초 임기 개시월 또는 퇴직월 등 신분 변동이 속한 월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(개정 2014.12.29)

**제3조(여비지급)**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

**제4조(여비의 종류)** ①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(철도운임, 선박운임, 항공운임, 자동차운임), 일비, 숙박비, 식비로 구분하며, 그 지급기준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 및 [별표 6]을 적용한다. (개정 2013.5.10, 2016.12.30) <개정 2021.12.31., 2022.11.16.>

② 외국을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, 일비, 숙박비, 식비, 준비금으로 구분하며, 그 지급기준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 및 [별표 6]을 적용한다. <개정 2013.5.10, 2016.12.30., 2020.12.31., 2022.11.16.>

**제5조(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)**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 (신설 2016.12.30.)

**제6조(준용)**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및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을 따른다.(개정 2008.1.4. 제5조에서이동 2016.12.30.)

[별표 1] <개정 2020.2.14., 2020.12.31., 2021.12.31., 2022.11.16., 2023.9.27.>

월정수당 지급기준표(제2조제3항 관련)

1. 연도별 월정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.

연 도	지 급 액
2023년	월 2,772,970원
2024년	월 2,820,110원
2025년	‘24년 월정수당에 ’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
2026년	‘25년 월정수당에 ’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

**지방자치법 시행령**

**제33조(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)**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 <개정 2023. 12. 14.>

1.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: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

2.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: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(이하 “의정비심의회”라 한다)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,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, 재정능력,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,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

3.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: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

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